[별지 제1호 서식]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(성운대학교)의 202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예운학원(성운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예운학원(성운대학교)의 2026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6년 04월 27일

학교법인 예운학원
감사 김현종 (인)

감사 이재웅 (인)

피감사자 (입회인)
직명 예운학원 이사
성명 이경재 (인)

직명 행정지원처장
성명 박만성 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법인 예운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2025 년 3월 1일부터 2026 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1.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등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 확보율 및 수익률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함. 가.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(100.0%) 미충족 나.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(2.71%) 미충족 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	1.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및 수익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·추진 중임. 가.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향상을 위해 법인 보유 자산의 현황을 재검토 중임. 나.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인상 및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 중임.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 원 직인 (사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성운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2025 년 3월 1일부터 2026 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	

피감사기관장 성운대학교 총장 윤 지 현 직인 (사인)